안전인증: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

[시행 2021. 3. 1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21호, 2021. 3. 11., 일부개정]

제1장 총칙삭 제

제1조(목적)

제2조(적용범위)

제3조(정의)

제2장 안전인증삭 제

제1절 안전인증신청 등삭 제

제4조(시료의 제출 및 보관 등)

제5조(수입자 안전인증)

제6조(안전인증신청서의 반려)

제7조(심사의 종류, 시기 및 방법)

제2절 심사 등삭 제

제8조(서면심사 제출서류)

제9조(서면심사 방법)

제9조의2(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등)

제10조(제품심사 방법)

제11조(이전 설치제품의 심사방법)

제3절 심사결과 처리삭 제

제12조(서면심사 등의 심사결과 보완 등)

제13조(심사결과통지서 교부의 생략)

제14조(안전인증서의 재교부 등)

제4절 확인 심사 등삭 제

제15조(확인심사 대상)

제16조(확인심사 방법)

제17조(확인심사 결과보완)

제18조(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일부면제)

제3장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삭 제

제19조(자율안전확인 신고 제출서류)

제4장 보칙삭 제

제20조(안전인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붙임)

제21조(변경절차)

제22조(보존서류)

제23조(안전인증 번호 부여 등)

제24조(안전인증실적 보고)

제25조 삭 제

제26조(연구개발제품의 제품심사)

제27조(심사반 구성 등)

제28조(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)

제29조(재검토기한)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

[시행 2021. 3. 1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21호, 2021. 3. 11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산업안전과), 044-202-7733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83조부터 제92조까지,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제74조 및 제77조,「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①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,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.
 - ②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, 규격 및 형식은 별표 2와 같다.
- 제3조(정의)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시료"란 영 제7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품을 말한다.
 - 2. "주요 구조부"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구조・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을 말한다.
 - 3. "형식 또는 모델"이란 기계 기구 등을 구조, 외형, 기능 및 성능 등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.
 - 4. "공인시험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한국인정기구(KOLAS)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
 - 나.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(ILAC) 또는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(APLAC)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
 - 다. 「전파법」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
 - 5. "수입안전인증제품"이란 국내에 설치・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말한다.
 - 6. "안전인증심의위원회"란 안전인증기관이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부 면제 여부 등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·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.
 -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「산업안전보건법」(이하 "법"이라한다), 영,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한다),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2장 안전인증

제1절 안전인증신청 등

- 제4조(시료의 제출 및 보관 등) ①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별표 3과 같이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시료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, 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
 -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까지 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제출받은 시료를 폐기하여야 한다.
- 제5조(수입자 안전인증) ①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은 영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·보호구의 각 제품별 10개 이하(제품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시료 수량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수입신고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
 - ② 안전인증기관은 수입자가 안전인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표 3에 따라 제품심사에 필요한 수량의 시료를 수입자로부터 제출받아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규칙 제1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는 면제할 수 있다.
- 제6조(안전인증신청서의 반려)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08조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가 인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.
- 제7조(심사의 종류, 시기 및 방법) ① 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규격 및 형식별 심사종류 및 시기는 별표 4에 따른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형식별 제품심사대상 기계·기구등에 대해 개별 제품심사로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와 확인심사는 면제한다.

제2절 심사 등

- 제8조(서면심사 제출서류) ①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표 13의 서면심사 제출 서류를 한글로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방법 설명서를 제외한 서류는 영문으로 제 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 규칙 별표 8의3에서 "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기계・기구등을 구성하는 부품・재료 및 완성품 등의 개별부품도, 구조・강도계산서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상세도
 - 2. 전기부품의 경우 전기회로도 등 전기관련 도면

- 3. 유압 공압 부품의 경우 회로도 등 관련 도면
- 제9조(서면심사 방법)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영 제74조제1항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형식별로 기술문서를 심사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형식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. 다만, 안전인증기관은 별표 5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안전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을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.
 - ② 2종 이상 동일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일형식 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별 제품심사대상 기계·기구등은 동일형식인 경우에도 개별 형식으로 서면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
- 제9조의2(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등) ① 규칙 제1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규칙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심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.
 - ② 규칙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"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"란 별표 6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1. 수입검사: 모든 수입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
 - 2. 공정관리: 제조공정도상의 관리규격이 도면규격상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, 작업자는 모든 작업표 준을 이행할 것
 - 3. 공정검사: 모든 공정 및 완제품 검사가 규정화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
- 제10조(제품심사 방법) ① 안전인증기관은 영 제74조제1항의 제품심사 대상이 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제품심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 일부 심사항목에 대한 제품심사 실시시기 또는 심사장소를 달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.
 - ② 안전인증기관은 영 제74조제1항제1호의 기계·기구 및 설비에 대해 안전인증 신청자가 스스로 시험을 실시한 후 제출한 용접부의 비파괴시험, 내압시험 및 하중시험 등의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.
 -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동일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성능 검증을 위해 동일형식 제품의 시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인증기관에 동일형식 제품 시료를 제출하여야한다.
- 제11조(이전 설치제품의 심사방법)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별표 4 제1호 라목, 마목 및 차목의 기계·기구 및 설비에 대해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 않고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서면심사를 면제하고 개별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절 심사결과 처리

제12조(서면심사 등의 심사결과 보완 등)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심사 종류별 심사결과 안전 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안전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보완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4조제 4항 별지 제45호 서식에 부적합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심사결과통지서 교부의 생략) 신청인이 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라 서면심사·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서면심사·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·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그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각각의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통지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안전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.
- **제14조(안전인증서의 재교부 등)**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.
 - 1.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
 - 2. 사업장 명칭 또는 신청인 명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경우
 - 3. 제조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

제4절 확인 심사 등

- 제15조(확인심사 대상) 규칙 제111조에 따른 확인심사의 대상은 제조자가 형식별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 계등에 한정한다.
- 제16조(확인심사 방법) ① 안전인증기관은 별표 7에 따라 확인할 형식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해당 형식별 시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안전인증기관은 확인심사를 할 때 생산 또는 보관중인 시료가 없거나 생산이 일시 중단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 - 1. 제품안전관리상태, 제작현황, 주요 시험 결과 등 현장 확인이 가능한 부분
 - 2. 원자재 구입, 원자재 사용내역 및 제품 생산내역 등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
- 제17조(확인심사 결과보완)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1조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 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규칙 제111조제1항제2호를 확인한 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일부면제) ① 규칙 제109조제2항제1호에 따른 "외국의 안전인증기관"이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을 말한다.
 - ② 외국의 안전인증기관과 제1항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려는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안전인증기준이 법 제83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

수 있다.

-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기관명과 상호인정의 범위 등의 사항을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안전인증기관이 규칙 제109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문서,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 제83조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면제한다.
-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안전인증기관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라도 외국에서 상용화되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심 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하고,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⑦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, 학계, 안전·보건 분야 등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한다. 또한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⑧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외국의 안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거나 안전인증의 일 부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장 자율안전확인의 신고

- 제19조(자율안전확인 신고 제출서류) 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의 설명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는 신고 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·검사 결과서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증명서류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다.
 - 1. 시험・검사 결과서: 자체 시험・검사결과서(자체시험・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)
 - 2.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시험 검사 결과서: 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류

제4장 보칙

- 제20조(안전인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붙임)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규칙 제114조와 제121조에 따른 안전인 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제품에 직접 붙여야 한다. 다만, 제품의 크기, 구조 등으로 인하여 직접 붙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이를 붙일 수 있다.
- 제21조(변경절차) ①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기계·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조자가 기계·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제조자는 안전인증기관 및 신고수리기관이 변경내용에 대하여 개선 또는 보완요청을 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22조(보존서류) ① 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보존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규칙 제120조에 따라 위탁기관에 제출한 서류
- 2.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설계 및 제조와 관련된 서류
- 3.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
- 제23조(안전인증 번호 부여 등)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실시 후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서에 표시하는 인증번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안전인증기관 구분표시
 - 2. 인증 연도
 - 3. 일련 번호
- 제24조(안전인증실적 보고)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4항과 제120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결과를 전산으로 통계관리 하여야 한다.
 -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결과에 대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 실적을,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5조 <삭 제 > (2009. 12. 23.)

제26조(연구개발제품의 제품심사)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의 연구·개발 등을 목적으로 완제품 또는 부분품에 대해 예비제품심사를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

- 제27조(심사반 구성 등)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08조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소속 직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, 심사책임자를 지정하여 규칙 제110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 - 1. 영 제74조제1항제1호의 기계・기구 및 설비
 - 가. 기계 구조설계, 용접 및 재료
 - 나. 자동화
 - 다. 전기 전자설비
 - 라. 유압 공압
 - 마. 제품경영
 - 바. 제품 위험성평가
 - 2. 영 제74조제1항제2호의 방호장치
 - 가. 재료 및 구조역학시험・검사

- 나. 보건 위생 및 화학분석시험 검사
- 다. 전기, 전자 및 전자파시험 ㆍ 검사
- 라. 열 및 온도 측정시험 · 검사
- 마. 제품경영
- 바. 제품 위험성평가
- 3. 영 제74조제1항제3호의 보호구
- 가. 재료 및 구조역학시험 ㆍ검사
- 나. 화학분석시험 ㆍ 검사
- 다. 전기 및 전자시험 · 검사
- 라. 열 및 온도 측정시험 · 검사
- 마. 음향 및 진동시험 검사
- 바. 광학 및 광도 측정시험 검사
- 사. 제품경영
- 아. 제품 위험성평가
-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반 구성 및 외부전문가 참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28조(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) 안전인증기관은 예비심사, 서면심사,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29조(재검토기한)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1-21호,2021.3.11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, 별표 3, 별표 5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